

## 신구조문 대비표 -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(보증처용)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<b>제 2조 용어의 정의</b> 1. “은행” 이란 신청인과 지급보증 약정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.	<b>제 2조 용어의 정의</b> 1. “은행” 이란 신청인과 지급보증 약정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<b>금융</b> 기관을 말합니다.	오태수정
<b>제4조 (보증채무의 이해청구)</b> 보증처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보증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피보증채무에 한하여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	<b>제4조 (보증채무의 이해청구)</b> 보증처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보증기간내에 <b>발생하는</b> 피보증채무에 한하여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	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
<b>제7조 (지급보증의 해지)</b>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지급보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나,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보증서 원본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.	<b>제7조 (지급보증의 해지)</b>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지급보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나, 보증기간( <b>별도의 청구기일이 표시된 경우 청구기일</b> ) 경과 후에는 지급보증서 원본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.	청구기일 추가
<b>제9조 (분실, 도난 또는 멸실)</b> 지급보증서의 원본을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서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 은행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	<b>제9조 (분실, 도난 또는 멸실)</b> 지급보증서의 원본을 <b>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서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 은행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b>	오태수정
<b>제11조 (약관적용 및 교부)</b> 3. 은행은 신청인에게 지급보증거래 약정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교부합니다.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기재한 지급보증서 원본을 보증처가 접수한 때 은행은 보증처에게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합니다.	<b>제11조 (약관적용 및 교부)</b> 3. 은행은 신청인에게 지급보증거래 약정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교부합니다.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기재한 지급보증서 원본을 보증처가 접수한 때 은행은 <b>보증처에</b>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합니다.	